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48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김성원・이헌승・고동진

김선교 · 임이자 · 이인선

박충권 · 김은혜 · 안상훈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8월,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 귀국이 결정되며 생존 애국지사 총 9명 중 8명이 국내에 거주하게 되었음.

「국적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모든 직계 후손은 특별귀화의 대상이 되는 반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상 지원 대상은 손자녀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중·고손자녀 및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의 및 그 동반 가족의 국 내 귀국 및 정착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함 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가족은 '국가가 책임진다' 는 인식을 확산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함.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日帝)강점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국 외 망명 후 해외에서 거주하게 된 독립유공자의 증손·고손자녀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장려·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증손·고손자녀"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후손으로서 공부(公簿) 자료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그 관계가 확 인되는 자를 말한다.
 - 2. "동반가족"이란 제1호에 따른 증손·고손자녀의 가족으로서 공부 자료 또는 유전자 검사에서 그 관계가 확인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증손·고손자녀(이하 "후손" 이라 한다)의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지원의 원칙)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및 동반가족의 그 정착 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 다.
-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의 후손 및 동반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등록신청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후손 및 동반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의 후손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7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등록신청대상자는 독립유공자의 후손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제3조에 따른 동반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제3조에 따른 동반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 6. 그 밖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후손의 순위변경, 등록결성의 취소, 추가등록결정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후손 및 동반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지원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9조(품위 유지 의무)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독립유공자

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예우

- 제10조(영주귀국정착금)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할 수있다.
 - 1. 독립유공자 후손 중 증손자녀 세대주
 - 2. 독립유공자 후손 중 고손자녀 세대주. 다만, 증손자녀가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영주귀국정착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지급시기를 달리 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 제11조(영주귀국정착금 지급신청) ① 제10조에 따라 영주귀국정착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정착금수령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영주귀국정착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정착금수령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동반가족(독립유공자 후손과 같이 생활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국내 정착 입증 자료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전세계약서 등 주거자금 입증자료
- 2. 의료비 등 가계 생활비 입증자료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항의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영주귀국정착금 지급의 신청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생활조정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증손자녀 세대주
 - 2.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고손자녀 세대주. 다만, 증손자녀가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생활조정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제12조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할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 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 험정보"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4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의 신청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조사·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및 생

활조정수당 수급자(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부양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조정수당 수급회망자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생활조정수당수급 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 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 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의 범위·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부양의무자가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

-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 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수급 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 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 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과하 법률」 제4조제1하
-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 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및 지급 계좌 등) ①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을 사람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양로시설이나 양육시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면 그 지원을 받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지원을 받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생활조정수당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 1. 사망한 경우
 - 2.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③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조 정수당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생활조정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생활조정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 제17조(권리의 보호) ① 생활조정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22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관한 법률」 제55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0조에 따라 영주귀국정착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 제18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 ②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 2.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 다만, 증손자녀가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③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 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 제19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1.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 2.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증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등의 기준과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 1.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을 할 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 3명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을 한다.

- 제20조(생업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 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위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 제21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 ②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 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

- 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 75세 이상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영주귀 국정착금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 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절차·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의 의료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를 준용한다.
- 제22조(대부)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 1.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 2. 독립유공자의 고손자녀. 다만, 증손자녀가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양로지원)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제10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

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 65세 이상의 남성 또는 만 60세 이상의 여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받는 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2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또는 그 동반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 보훈부장관이 정한다.
- 제25조(양육지원)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 및 고손자녀 중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 19세가 된 사람이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9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 학교를 졸

업할 때까지 국가의 양육시설에서 계속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양로지원 등의 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양로지원 및 양육지원을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양로지원과 양육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2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 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제28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1. 제10조에 따라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 후 손 중 세대주
 - 2. 제10조에 따라 영주귀국정착금 지급 대상이 아닌 독립유공자 후 손 중 세대주
 -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그 민영주택건설·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 신청 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보칙

- 제29조(영주귀국지원 재단) ① 정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정착지원을 위하여 영주귀국지원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업무에 관한 사항
 -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7. 공고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내부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시에 관한 사항

-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 2.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사업
- 3.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 4.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장학사업
- 5. 독립유공자 후손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 6.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 · 연구사업
- 7. 독립유공자 후손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 8. 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독립유공자 후손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있다.
-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⑨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 4. 그 밖의 수익금
- ①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③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영주귀국지원 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b)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영주귀국정착금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주귀국정착금 등(이하 "영주 귀국정착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귀국정착금등을 받았거나, 영주귀국정착금등을 받은 후 그 영주귀국정착금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또는 영주귀국정착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영주귀 국정착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제10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금
 -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수업료·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와 학습보조비
 - 3.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항 및 제39조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능력개발 장려금·지원비
 - 4. 제21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 5.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영주귀국정착 금등을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 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주귀국정착금등을 환

수하거나 징수 할 때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 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 정되면 결손처분(缺損處分) 할 수 있다.

- 제31조(반환의무의 면제)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등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할 수 있다.
- 제32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한다.
 - 1.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 2. 제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 3. 제10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금의 지급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확인 을 위한 조사

- 5.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
- 6. 제1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 7. 제22조에 따른 대부에 관한 사무
- 8. 제28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 9. 제30조에 따른 영주귀국정착금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주귀국정착 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4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독립유공자의 후 손에 대한 예우를 할 때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독립유 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장 벌칙

-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 2. 제15조제6항(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6조(과태료)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

- 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2.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 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
- 3.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사람
- 제3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6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